

영등포구의회
제14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4. 2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3. 25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, 거주기간 부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부 출산가정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, 12개월 미만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함.(안 제4조 제1항)

-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기한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이나, 12개월 미만 거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구에 거주한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.(안 제5조 제2항)

■ 관련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10조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중구, 서초구, 강동구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12개월 미만 우리구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거주기간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
 - 2008년 출산장려금 집행실적은 셋째 아이는 165명 82,500천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명 10,500천원으로 총 180명 93,000천원입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4. 2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계법령

관 련 법 령

■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■ 건강가정기본법

제21조 (가정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형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·출산·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0.17>

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